

# 서울특별시 강북구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 1. 제안이유

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제34조제2항의 단서에서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는 자를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 조례 제3조에서 동일한 사항을 중복 열거하고 있어 불필요한 관련 조문을 삭제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제34조제2항의 단서와 중복 열거 사항인 안 제3조의 각 호 부분을 삭제(안 제3조)

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, 제34조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 :

1) 입법예고(2015.11.27. ~ 2015.12.17.) 결과,

2) 부패영향평가 결과 : 원안동의

3) 성별영향평가 결과 : 원안동의

서울특별시 강북구 조례 제 호

## 서울특별시 강북구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 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강북구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.

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위원의 자격) 위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위원회가 구성되는 해의 1월 1일을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(이하 "강북구"라 한다)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9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. 다만, 영 제34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.	제3조(위원의 자격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
1. 「공직선거법」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권이 없는 자	<삭 제>
2. 서울특별시 강북구청 소속 공무원	<삭 제>
3.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	<삭 제>
4.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구역 내 교육청의 교육위원	<삭 제>
5. 위 2,3,4호의 배우자 · 직계존비속 · 형제자매	<삭 제>